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년 달라지는 제도 **A to Z**

2021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는 미처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여파로 사회·경제 각 분야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올해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각 분야의 제도들이 조금씩 달라질 예정이다. 바뀌는 제도 내용을 미리 숙지하여 변화에 대비하도록 하자.

정리, 편집부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건·복지·고용 분야

기초연금 지급 확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

※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월 최대 30만 원 지급

시행일 2021. 1.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원추각막과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이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신규 지정돼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외래 모두 10%로 낮아졌다.

시행일 2021. 1.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흉부(유방) 및 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기존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게만 보험 적용

확대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 하반기에는 심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각각 확대 적용

시행일 2021년 상반기: 흉부(유방), 하반기: 심장 초음파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소득 하위 70% 이하인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월 최대 30만 원, 나머지는 월 최대 25만 원을 받았다.

시행일 2021. 1.

최저임금액 인상

2021년 최저임금은 2020년보다 1.5% 늘어난 시간당 8,720원이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 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만 2,48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일괄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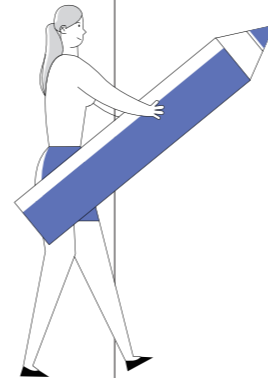
시행일 2021. 1.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시행일 2021.



금융·재정·조세 분야

상속세 전자신고 도입

- 상속세 신고서식의 입력·조회·출력·파일변환이 가능한 상속세 전자신고 개발
- 상속세 예상세액 계산이 가능한 모의계산 서비스 및 종합안내포털 구축

시행일 2021. 2. 예정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 현행 의무발급 대상: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일반교습학원, 가구소매업, 골프장 운영업, 음식점업 등 77개 업종
- 확대되는 의무발급 대상
 - »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 9개 업종
 - » 전자상거래 소매업

※ 단, 현행 의무발급 대상(77개 업종) 및 확대되는 의무발급 대상(9개 업종)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분에 한정

시행일 2021. 1. 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국토·교통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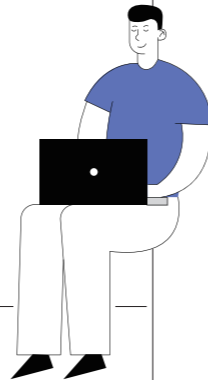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결함 추정 결함조사 시 제작자에 대해 자료제출 의무 부여 및 화재 빈발 등 특정조건(대통령령으로 위임) 하에서 자료 미제출 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

과징금 상향 제작자가 차량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공개(신설)하거나, 녹장리콜 시 과징금 상향 (해당 차종 매출액의 1% → 3%)

손해배상 제31조 제1항에 따른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토록 규정 (무과실 책임으로 전환)하고,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하지 않아 생명·신체, 재산에 중대 손해 발생 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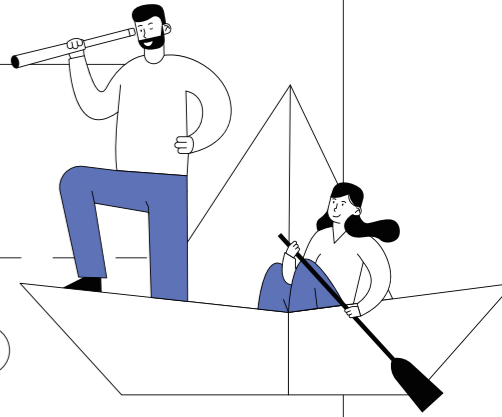
시행일 2021. 2. 5.(금)



환경·기상 분야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or.kr/info)'에 공개
시행일 2021. 4.



교육·보육·가족 분야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학비 부담 경감

대상학교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

제외학교 적용 기준은 초·중학교와 동일

시행일 2021.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기존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하여 지원하며, 초등학생은 286천 원, 중학생은 376천 원, 고등학생은 448천 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 24% 인상
* 중위소득 50%(예: '21년 기준, 4인 가구 243만 원)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신청방법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 교육비(방과후학교 수강권, 급식비 등 지원)도 함께 신청하면 교육급여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가능

문의전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시행일 2021. 3.

[2021년 교육급여 지원 확대 및 항목 개편]

2020			2021			
지원항목	학교급	지원금액	지원항목	활용	'20년 대비	
부교재비	초	134,000원	교육활동 지원비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초	286,000원 38.8%↑
	중	212,000원			중	376,000원 27.5%↑
	고	339,200원			고	448,000원 6.1%↑
학용품비	초	72,000원				
	중·고	83,000원				

농림·수산·식품 분야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농업·농촌 생활을 미리 체험하고 귀농·귀촌을 결정할 수 있도록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최대 6개월간 농촌체험활동, 주민화합활동, 현장견학 등 지역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월 15일 이상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경우에는 월 30만 원의 연수비를 지급한다.

시행일 2021. 3. 예정(현재 세부시행계획 마련 중)

행정·안전·질서 분야

동물판매업자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등록 의무화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 등록 신청 후 판매하여야 한다.

* 2개월령 이상인 개

시행일 2021. 2. 12.(금)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맹견*의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①도사견 ②아메리칸 핏볼테리어 ③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④스태퍼드셔 볼 테리어 ⑤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시행일 2021. 2. 12.(금)

농어촌 민박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해 대인 1인당 1억 5,000만 원, 대물 1사고 당 10억 원까지 보상한다. 가입 시한은 사업자 신고 후 30일 이내이며, 기존 농어촌민박 사업을 영위하는 민박사업시설은 6월 9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2021년 5월 9일 이후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는 신고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기한 내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위반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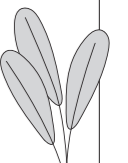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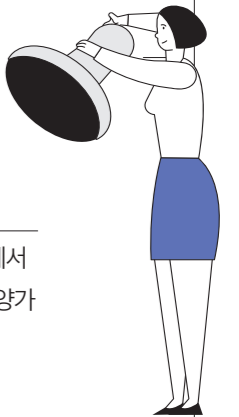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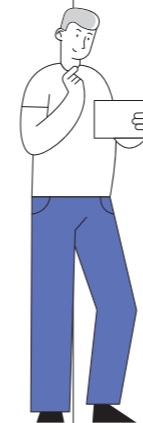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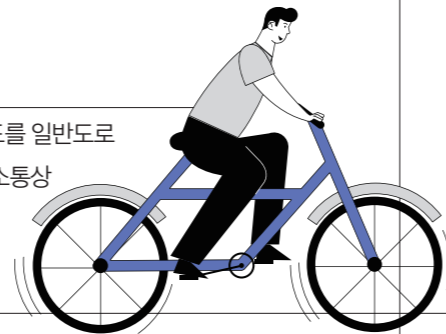
시행일 2020. 12. 10.(목)

가입 특례기간 ~2021. 6. 9.(수)

안전속도 5030 정책 전국 시행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내 일반도로의 차량속도를 일반도로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 30km/h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지방청장이 소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은 60km/h 이내로 관리한다.

시행일 2021. 4. 17.(토)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이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범칙금이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 기준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

시행일 2021. 5. 11.(화)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증명서 신청·발급·제출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증명서가 주민등록등초본 등 13종에서 2021년 1월부터는 소득금액증명·장애인증명서 등 100종으로 대폭 확대

시행일 2021. 1.

부동산 분야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무도입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당첨됐다면 완공 이후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에 따라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5년을 직접 입주해 살아야 하며,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2~3년 거주해야 한다.

시행일 2021. 2. 19.(금)

전월세 신고제 시행

주택 전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안에 계약 당사자가 해당 계약 내용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임대기간·보증금·임대료·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이와 같은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도 부여된다. 만약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다만 오피스텔·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시행일 2021. 6.

신혼부부 특별공급·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로 교체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요건이 2021년부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로 완화된다.

구분	물량	현행		2021년	
		물량	소득기준	물량	소득기준
공공주택	100%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우선(70%)	100%(맞벌이 120%)
				일반(30%)	130%(맞벌이 140%)
민영주택	기본세율	100%(맞벌이 120%)		우선(70%)	100%(맞벌이 120%)
		120%(맞벌이 130%)		일반(30%)	140%(맞벌이 160%)

시행일 2021. 1.